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

제정일 : 2004.02.20
개정일 : 2006.03.01
2007.03.01
2008.02.04
2010.10.08
2012.03.01
2013.04.24
2014.04.22
2016.10.07
2020.10.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조직 및 기능) ①연구전략센터는 R&D기획 및 사업지원, 연구관련 시스템 지원, 대학 공동연구기기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산학운영센터는 연구과제 및 지식재산관리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0.07><개정 2020.10.07>
③ <삭제 2013.04.24.>
④ <삭제 2013.04.24.>
⑤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주요 업무에 관한 실무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처/산학협력단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18.]

제3조(직원) ① 산학협력단의 직급 관련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급여 및 복지) ①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는 산학협력단 보수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②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금 및 보험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5조(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3회, 임시 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안에, 그리고 매 회계년도마감 후 2개월 안에 개최하며,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10월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 2 (총장승인 절차) 정관 제15조 2항, 제21조, 제28조의 사항은 본교 연구처와 기획실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12.01.18.]

제6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소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 심의, 창업 지원,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원주산학협력단

제8조(원주산학협력단장) <삭제 2012.01.18>
제9조(운영위원회) <삭제 2012.01.18>
제10조(사무과) <삭제 2012.01.18>.
제11조(기타) <삭제 2012.01.18>

제5장 의료원산학협력단

제12조(조직 및 운영) ① 의료원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의무부총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원 산학협력단 관련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료원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두며, 주요 심의결과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 한다. 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삭제

제14조(사무과) ① 연세의료원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업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2012.01.18>
② 사무팀장은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01.18>

제15조(운영규정) 의료원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6장 내부감사

제16조(실시)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회계, 계약, 행정 업무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1.18>

②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2.01.18>

제17조(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기감사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감사 대상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사항과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연구수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일상감사는 행정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 업무 중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④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내부감사가 연세대학교 내부감사 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와 중복될 때, 연세대학교 내부감사 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로 본조의 감사를 대신토록 할 수 있다.

제18조(계획 수립) ①감사인은 매년 학기 개시 30일 전에 감사의 구분,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기본계획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 감사 계획도 포함된다.
②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본계획에 의거한 세부 감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일상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사팀 구성) 감사팀은 정관 제 7조에 의거하여 임면된 감사인 및 감사인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감사실시 30일 전에 구성하고, 감사실시 15일 전에 해당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인 및 감사팀원의 의무) ①감사인 및 감사팀원은 감사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인 및 감사팀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시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공문으로 미리 통지하거나, 감사인으로 하여금 휴대케 하여 전달한다.

제22조(기간) 정기감사는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필요시 5일간 연장할 수 있고, 특별감사는 5일 이내에 완료하고 필요시 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는 5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23조(자료제출)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방법 및 절차) ①감사의 방법 및 절차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연구비의 경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현장 정밀 검증시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에게 이를 7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해당 검증일 1일에 한하여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감사시 필요한 경우 현장 정밀검증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의 조치) ①감사인은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사항에 대해 보고서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감사결과 부당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에게 감사인을 통해 지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의 개폐
2. 행정업무개선
3. 부적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 및 추징
4.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5. 시정 및 주의
6.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비 지원 제한
7. 기타 필요한 조치
③ 전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결과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감사인을 통해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산하기관

제27조(연세창업센터)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세창업센터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된 연세창업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8조(대학기술이전센터) <삭제 2013.04.24.>

제29조(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단 산하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9조의 2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0조(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세대학교 소속 각종 연구소, 사업단 및 연구 센터를 산학협력단에 소속시킬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31조 (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 개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32조 (세칙의 보완)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제33조 (산학협력국 운영) 삭제(2010.10.08.)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제3조의 4항, 제4조의 1항과 신설된 33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신설된 제29조의 2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제2조, 제3조, 제33조의 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삭제된 제4장, 신설된 제2조 4항, 5항, 제5조의 2, 개정된 제13조 4항, 제14조, 제16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된 제2조의 2항과 삭제된 제2조의 3항, 4항, 제28조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5조의2)은 총장결재일 다음날(2020.10.13)부터 시행한다.